

대전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2나12150(본소), 2022나12167(반소) 판결
[주식매수청구 · 주식반환청구 등]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2나12150(본소), 2022나12167(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4. 14 선고 2021가합30945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심재필

변론 종결 2022. 9. 21.

판결 선고 2022. 10. 26.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4. 14. 선고 2021가합30945(본소), 31030(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나. 반소 :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추가하여 원고 및 피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B 주식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로, 각 '피고 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회사'로, 각 '피고들'과 '피고 C'은 '피고'로 고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마지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음-

『위와 같이 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피고는 2000. 5.경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그 취득의 법률상 원인 역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추정을 번복하려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중 대여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선준

판사이진영

판사이선미

별지